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다. 수소제조용: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를 받은 자가 수소를 제조하는 용도(도시가스를 고압으로 공급받아 수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별표 6 제3호가목2)가) 항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배관으로서 별표 5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고,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4MPa 이하로 할 수 있다.

별표 6 제3호가목2)가)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가)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
- ② 산업체 원료용(동일 산업체 안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)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
- ③ 수소를 제조할 목적으로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① (생략)	제2조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「도시가스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	2. ----- ----- -----
가.·나. (생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다. 수소제조용: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를 받은 자가 수소를 제조하는 용도(도시가스를 고압으로 공급받아 수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</u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⑦ (생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